

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및 계룡시, 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

1. 시의회 의장
2.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장 또는 계룡대근무지원단장
3. 계룡시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
4. 국가정보원 관계자
5. 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
6. 교육장 또는 교장
7.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총무·민방위담당간사 : 업무담당과장
2. 심리전담담당간사 : 업무담당과장

제3조 (협의회의 심의사항)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취약지역 대비책
2. 통제구역 설정
3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4조 (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) ①시장, 면·동장 소속하에 시, 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

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면·동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.

1. 시 지원본부

- 가.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
- 나.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.
- 다. 분야별 지원 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 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.
- 라.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- 마.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2. 면·동 지원본부

- 가.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·동장이 된다.
- 나. 상황실은 실장과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면·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·감독한다.
- 다. 분야별 지원 반은 총괄지원반, 보급(급식)지원반, 동원지원반, 재정지원반, 통신지원반, 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 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의 반원으로 한다.
- 라. 분야별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- 마.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제5조 (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제3조제1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

-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
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
- 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
-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
-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
-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

2.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

- 가. 10년생 이상의 입목
- 나. 모래 벙커 또는 연못
- 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)

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·문화시설 등의 구조물

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

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

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 실시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